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규제자유특구 및
지역특화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첨단 기술 선점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신속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개선·보완하여 네거티브 규제특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

3. 주요내용

가. 우선허용·사후규제 원칙이 적용되는 규제목록 작성

- 법 제4조의 우선허용·사후규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제한·제재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목록을 작성·고시(안 제2조의2)

다.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 마련 (안 제68조의2)

- 규제자유특구에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인증기관 및 클러스터와의 협력체계 구축, 국제 공동R&D 등 근거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10.16.~11.24)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우선허용·사후규제 목록 작성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우선허용·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제한 또는 제재하는 사항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(이하 “규제목록”이라 한다) 이를 고시한다.

② 제1항의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제한 또는 제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형사(刑事), 행형(行刑)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
2. 과징금,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목록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8조의2(국제협력 등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

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1.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
2.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
3. 국제 공동 연구개발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우선허용·사후규제 목록 작성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우선허용·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제한 또는 제재하는 사항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(이하 “규제목록”이라 한다) 이를 고시한다.</u> <u>② 제1항의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제한 또는 제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</u> <u>1. 형사(刑事), 행형(行刑)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</u> <u>2. 과징금,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</u> <u>3.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</u> <u>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</u>

	<u>따른 규제목록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68조의2(국제협력 등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</u> <u>1.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</u> <u>2.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</u> <u>3. 국제 공동 연구개발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204